

산 림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산지전용허가협의(대체산림자원조성비) 부적정

기 관 명 강서구, 동래구, 해운대구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지사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지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(이하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”라 한다)을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산광역시 강서구(○○과)는 【표 1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’과 같이 (주)○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의 건축(신축) 신청에 따라 강서구(○○○○과)로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(○○과-0000, 2016. 1. 27.)’을 하였으며, 또한 (주)○○○○○의 건축허가(변경) 신청이 있어 ‘건축복합민원 일괄의회 개최 계획(○○과-00000, 2016. 7. 22.)’을 알렸다.

【표 1】 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

구분	신청자	목적	전용대상산지(㎡)			
			소재지	계	보전	준보전
산지전용허가	(주)○○○○○	건축허가(신축)	○○구 ○○동 산000-00	1,502	-	1,502
산지전용허가	(주)○○○○○	건축허가(변경)	○○구 ○○동 0000-0	477	-	477

【표 2】 산지전용허가 조건

협지지	협지면적 (㎡)	협의기간	협약조건
○○구 ○○동 산000-0	1,502	2016.3.7. ~ 2016.11.31. * 건축허가기간 1년 연장	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617,480원 착공 전 납부
○○구 ○○동 0000-0	477	2016.9.7. ~ 2018.7.31.	대체산림자원조성비 1,912,770원 착공 전 납부 *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067,320원으로 정정 (2016.8.4.)

강서구(○○○○과)는 산지전용 협의(○○○○○○) 요청에 따라 2016. 2. 4. ‘산지전용 협의 검토보고서(○○동 산000-00번지, ○○**)’를 작성 후 강서구(○○과)로 ‘건축허가(신축)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회신(2016. 2. 4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617,480원은 사업 착공 전 까지 납부토록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후 착공계 접수’하라는 「산지전용 협의 의견서」를 제출함에 따라, 강서구(○○과)는 ○○과-0000(2016. 3. 7.)호로 (주)○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에게 ‘건축허가(신축) 처리(사항) 알림’으로 건축허가 처리됨을 통보하면서, 위 【표 2】 ‘산지전용 허가조건’과 같은 산지전용허가조건을 부과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(주)○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617,4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.

또한 강서구(○○과)의 산지전용 협의(○○○○○○) 요청에 따라 강서구(○○○○과)는 2016. 7. 28. ‘산지전용 협의 검토보고서(○○동 0000-0번지, ○○**)’를 작성 후 ‘산지전용 협의 회신(2016. 7. 28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067,320원(당초 1,912,770원)은 사업 착공 전까지 납부토록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후 착공계 접수’하라는 「산지전용 협의 의견서」를 제출함에 따라, 강서구(○○

과)는 ○○과-00000(2016. 9. 7.)호로 ○○○○○○에게 ‘건축허가(신축) 처리(사항) 알림’으로 건축허가 처리됨을 통보하면서, 위 【표 2】 ‘산지전용허가조건’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조건을 부과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○○○○○는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067,3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.

동래구(○○과)는 아래 【표 3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’과 같이 ○○○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○○○의 ‘공동주택 신축 허가 신청’에 따라, 동래구(○○과)에 ‘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(○○○구역) 협의 요청(○○과-00000호, 2015. 7. 31.)’에 따른 의견을 제출 요청하였다.

【표 3】 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

구분	신청자	목적	전용대상산지(㎡)			
			소재지	계	보전	준보전
산지전용협의	○○○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주택재개발신축공사	○○구 ○○동 000-0번지외 0	942	-	942
산지전용협의	○○동 지역주택조합	공동주택건립	○○구 ○○동 산000-0번지	8,401	-	8,401

【표 4】 산지전용허가조건

협의지	협의면적(㎡)	협의기간	협의조건
○○구 ○○동 000-0번지외 0	942	2015.11.17. ~ 2018.11.16.	착공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,020,410원 납부
○○구 ○○동 산000-0번지	8,401	2016. 7.18. ~ 2019. 7.17.	착공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8,053,720원 납부

또한 동래구(○○과)는 2015. 8. 13. ‘산지전용 및 공원관련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서(○○0구역 재개발지역)’를 작성 후 동래구(○○과)로 ‘주택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 회신(○○0구역, ○○과-00000호, 2015. 8. 17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3,020,410원은 사업 착공전 납부’하도록 하여, 동래구(○○과)는 위 【표 4】 ‘산지전용허가조건’과 같이 ○○과-00000(2015. 11. 17.)호로 ‘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알림(○○0구역)’ 사항을 알리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,020,410원은 착공 전 납부’하도록 인가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,020,410원을 납부되지 않았다.

또한 동래구(○○과)는 위 【표 3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’과 같이 ○○동 지역주택조합의 ‘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’에 따라, 동래구(○○과)에 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재협의(○○○○동 지역주택조합외 0인) 요청(○○과-00000호, 2016. 7. 5.)’에 따른 의견을 제출 요청하였고, 동래구(○○과)는 2016. 7. 8. ‘산지전용허가 신청(변경)에 따른 검토보고서(○○동 산000-0번지 일원)’를 작성 후 동래구(○○과)로 ‘산지전용허가 신청(변경)에 따른 의견 회신(○○동 산000-0번지 일원, ○○과-0000호, 2016. 7. 8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48,053,720원은 사업 착공전 납부’하도록 하여, 동래구(○○과)는 위 【표 4】 ‘산지전용허가조건’과 같이 ○○과-00000(2016. 7. 18.)호로 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 통보(○○○○동 지역주택조합 외 0인)’ 사항을 알리면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48,053,720원은 착공 전 납부’하도록 승인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8,053,720원을 납부되지 않았다.

해운대구(○○과)는 아래 【표 5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

협의 요청'과 같이 ○○ 0-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○○○가 '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' 함에 따라, 해운대구(○○○과)에 '실무종합심의회 개최(○○0-0구역, ○○과-0000호, 2016. 3. 3.)'에 따른 의견을 제출 요청하였고, 해운대구(○○○과)는 2016. 4. 22. '주택재개발정비사업(○○0-0구역)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'를 작성 후 해운대구(○○과)로 '주택재개발정비사업(○○0-0구역)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의견 회신(○○○과-0000호, 2016. 4. 22.)'을 하면서, '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159,510원은 착공 전 ○○○과에서 사전유선 등 통보 후에 고지 기간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'하도록 하였다.

또한 해운대구(○○과)는 아래 【표 6】 '산지전용허가조건'과 같이 ○○과-0000(2016. 5. 27.)호로 '○○0-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' 사항을 알리면서 '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159,510원은 착공 전 납부'하도록 인가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159,510원을 납부되지 않았다.

【표 5】 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

구분	신청자	목적	전용대상산지(㎡)			
			소재지	계	보전	준보전
산지전용 협의	○○○	○○0-0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	○○○구 ○○동 0000번지 일원	522	-	522
산지전용 협의	○○○	공동주택(다세대), 업무시설(오피스텔)	○○○구 ○동 000-00번지외 0	337	-	337
산지전용 협의	○○○	업무시설(오피스텔), 공동 주택(다세대주택) 제2층근생	○○○구 ○○동 산00-0번지외 0	865	-	865

【표 6】 산지전용허가조건

협 의 지	협 의 면 적 (㎡)	협 의 기 간	협 의 조 건
○○○구 ○○동 0000번지 일원	522	2016. 5.27. ~ 2020. 5.26.	착공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159,510원 납부
○○○구 ○동 000-00번지외 0	337	2016. 7.13. ~ 2018. 7.12.	착공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702,740원 납부
○○○구 ○○동 산00-0번지외 0	865	2016.12.22. ~ 2017.12.21.	착공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,845,730원 납부

해운대구(○○과)는 위 【표 5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’과 같이 ○○○가 건축허가(신축)를 신청 함에 따라 해운대구(○○○과)에 ‘민원실무심의회 개최(○동 000-00외 0필지, ○○과-00000호, 2016. 6. 17.)’에 따른 의견을 제출 요청 하였고, 해운대구(○○○과)는 2016. 7. 1. ‘건축허가(신축허가, ○동 0000-00외 0필지, ○○○)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’를 작성 후 해운대구(○○과)로 ‘건축허가(신축허가, ○동 000-00외 0필지, ○○○) 신청에 따른 의견 회신(○○○과-00000호, 2016. 7. 1.)’을 하면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702,740원은 착공 전 ○○○과에서 사전유선 등 통보 후에 고지 기간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’하도록 하여, 해운대구(○○과)는 위 표6 ‘산지전용허가조건’과 같이 ○○과-00000(2016. 7. 13.)호로 ‘건축허가(신축)(○동 000-00외 0필지)’ 사항을 알리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702,740원은 착공 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시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,702,740원을 납부되지 않았다.

해운대구(○○과)는 위 【표 5】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요청’과 같이 ○○○이 건축허가(신축) 신청 함에 따라 해운대구(○○○과)에 ‘실무종합심의회(신축허가) 개최(○동 산00-0번지외 0, ○○과-00000호, 2016.8.7.)’

에 따른 의견을 제출 요청 하였고, 해운대구(○○○과)는 2016.8.16. ‘실무종합심의회(신축허가, ○○동 산00-0번지외 0) 개최에 따른 검토보고서’를 작성 후 ‘건축허가(신축허가, ○○동 산00-0번지외 0) 신청에 따른 의견을 회신(○○○과-00000호, 2016. 8. 16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4,845,730원은 착공전 ○○○과에서 사전유선 등 통보 후에 고지 기간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’ 하도록 하였다.

해운대구(○○과)는 위 【표 6】 ‘산지전용허가조건’과 같이 ○○과-00000 2016. 12. 22.)호로 ‘건축허가(신축허가, ○○동 산00-0번지외 0)’ 사항을 알리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,845,730원은 착공 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 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,845,73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

강서구청장은

[시정] 미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,684,800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동래구청장은

[시정] 미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1,074,130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해운대구청장은

[시정] 미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,707,980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